##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30

발의연월일: 2022. 9. 29.

발 의 자:김학용・김민철・金炳旭

김수흥 · 김승수 · 김영진

김희국 · 노웅래 · 도종환

박대수 • 박덕흠 • 박성중

배현진 • 백종헌 • 서범수

서삼석 · 송석준 · 안규백

어기구 · 엄태영 · 유동수

윤상현 • 윤한홍 • 이만희

이상민 · 이양수 · 이용호

이종배 · 이철규 · 임이자

정운천 · 정점식 · 조명희

조오섭 • 주호영 • 지성호

최승재 · 최재형 · 최춘식

태영호 · 하태경 · 한기호

허종식 · 홍영표 의원

(44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는 모든 국민과 22개 유엔참전국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제대군인 지원, 대국민 보훈선양, 보훈문화 조성, 국립묘 지 관리, 보훈외교 등 다양한 정책과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61년 창설 당시 약 15만 여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는 제대군인을 비롯하여 현재 약 1,300만 여명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보훈처의 조직형태는 '부(部)'가 아닌 정부 전체에 대한 지원(staff) 기능을 담당하는 '처(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훈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국가보훈처장 또한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부서권과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국정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보훈정책 추진과 보훈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참전국은 보훈 주관부처가 '부(部)'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처(處)'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보훈사업의 중요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보훈의 위상과보훈가족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부부처 간 협조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보훈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데 어려움을야기 시키고 있음.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조항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의 정책적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9호및 제45조 신설 등).

법률 제 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가보훈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 보훈문화 및 국립묘지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5조에 규정된 사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은 국가보훈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보훈처장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승 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 속 공무원 또는 총리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보훈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 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
안제출) ① <u>국무조정실장·국가</u>	안제출) ① <u>국무조정실장</u>
<u>보훈처장</u> • 인사혁신처장 • 법제	
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	<u>&lt;삭 제&gt;</u>
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	
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제26조(행정각부) ①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b>.</b>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9. 국가보훈부</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제4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

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 보훈문화 및 국립묘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